

안성 아양지구 B-3-1BL 영무예다음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를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6.02. 포함) 종전 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단지 주요 정보

(분양문의) 031-671-7700

주택 유형	해당 지역	기타 경기	기타 지역	규제 지역 여부
민영	경기도 안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6.02. 이전부터 거주자)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4.12.02. 이전부터 계속 거주)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거주자	비규제 지역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6.02.(월)	25.06.12.(목)	25.06.13.(금)	25.06.16.(월)	25.06.20.(금)	25.06.21.(토) ~ 25.06.22.(일)	25.07.01.(화) ~ 25.07.03.(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 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 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청약홈 콜센터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 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4.2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름.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음.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 주택, 규제 지역 무순위) 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신청 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 서류 등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 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 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 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 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 항목 등 청약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 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 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 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를 바람.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 청약 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 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 입주자 지위 무효)로 되오니 유의하시기를 바람.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 간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 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됨.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 신청자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 신청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 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를 바람.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 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등·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함.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음.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됨.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안성아양영무예다움.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 배정하지 않음.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함.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함.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함.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됨.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음.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함.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함.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함.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함.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함.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6.02.(월)**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함.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성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24.06.02.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4.12.02.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안성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함. (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본 건본주택 개관일은 2025.06.06.(금)부터 가능하며 관람시간은 10:00 ~ 17:00 까지 관람 가능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5.06.12.(목)	25.06.13.(금)	25.06.16.(월)	25.06.20.(금)	25.06.21.(토)~ 25.06.22.(일)	25.07.01.(화)~ 25.07.03.(목)
방 법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PC·모바일) 청약홈	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38)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점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함.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음.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 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함.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안성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음.

구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청 주택과 - 20682호 (2025. 05. 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556 (아양지구 B-3-1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25층 4개동 총 288세대 중 일반분양 288세대

[특별공급 184세대(기관추천 28세대, 다자녀가구 28세대, 신혼부부 66세대, 노부모부양 8세대, 생애최초 5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197	01	084.9944	84	84.9944	26.0631	111.0575	61.7819	172.8394	58.9520	288	28	28	66	8	54	184	104	14

■ 주택형 약식표기 안내

공고상 (청약시) 주택형	084.9944
약식표기	84

※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는 총 공급 세대(288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임.

※ 최하층이라 함은 각동별 라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해드릴 예정임.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음.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 면적과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가 속한 동의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고의 내용 중 약식표기로 표현된 내용이 있으니 주택형과 약식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 홍보물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m²]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층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합계	1차	2차	1차(15%)	2차(15%)	3차(15%)	4차(15%)	입주시
								계약시	계약후 10일 이내	2025-11-28	2026-05-28	2026-12-28	2027-06-28	
084.9944	84	288	1층	8	107,635,000	272,365,000	380,000,000	5,000,000	14,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33,000,000
			2층	8	107,635,000	284,365,000	392,000,000	5,000,000	14,6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137,200,000
			3~4층	28	107,635,000	299,365,000	407,000,000	5,000,000	15,350,000	61,050,000	61,050,000	61,050,000	61,050,000	142,450,000
			5~6층	28	107,635,000	311,365,000	419,000,000	5,000,000	15,950,000	62,850,000	62,850,000	62,850,000	62,850,000	146,650,000
			7~9층	42	107,635,000	321,365,000	429,000,000	5,000,000	16,450,000	64,350,000	64,350,000	64,350,000	64,350,000	150,150,000
			10~19층	126	107,635,000	329,365,000	437,000,000	5,000,000	16,850,000	65,550,000	65,550,000	65,550,000	65,550,000	152,950,000
			20층이상	48	107,635,000	333,365,000	441,000,000	5,000,000	17,050,000	66,150,000	66,150,000	66,150,000	66,150,000	154,350,000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예정자의 분양대금 납부분 중 일부 금액은 당 사업지 토지비 대출 대환, 단지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오니 계약 체결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세대수

구 분 (약식표기)			84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6
	장기복무 제대군인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5
	장애인	경기도	2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2
	중소기업 근로자		6
	소계		2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50%)		1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50%)		14
	소계		28
신혼부부 특별공급			6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
생애최초 특별공급			54
합 계			184

※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배정하였음.

※ “국가유공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음.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 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음.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함.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음.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함.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함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함.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경기도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함.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 지역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안성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단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성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 함), 나머지 50%는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거주자에게 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또한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우선공급 물량의 낙첨자가 기타지역 물량에서 재경쟁 시 해당 지역거주자 우선공급기준은 미적용됨.

■ ② 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안성시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하고,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우선 공급함.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안성시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거주 및 경기도 6개월미만)내 거주한 자 50% 순으로 공급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5.06.02.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비고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안성시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내에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thead><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thead><tbody><tr><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9">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tr><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r><tr><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tr><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tr><td>3명</td><td>20</td><td></td><td></td></tr><tr><td rowspan="9">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9">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r><tr><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td><td></td></tr></tbody></table>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주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본 공고는 60㎡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생애최초 청약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 rowspan="2">5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안성시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거주 및 경기도 6개월미만)내 거주한 자 50% 순으로 공급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5.06.02.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안성시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거주 및 경기도 6개월미만)내 거주한 자 50% 순으로 공급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 / 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음.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③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tr><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tr><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tr><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tr><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④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함.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 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5.06.12.(목)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09:00 ~ 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은행창구 접수 불가
			건본주택 (10:00 ~ 14:00)	- 안성 영무 예다음 건본주택 청약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안성 아양 영무예다음 건본주택 -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38
일반공급	1순위	2025.06.13.(금) 09:00 ~ 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5.06.16.(월) 09:00 ~ 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 (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함.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함.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임.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함.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6.20.(금) ~ 2025.06.29(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음.
	문자	- 제공일시 : 2025.06.20.(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람.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 제출장소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5.06.21.(토) ~ 2025.06.22.(일)	안성 영무예다음 견본주택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 생략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 모바일신분증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발급 (대리인 발급 불가) / 발급용도 : 서류제출 (청약신청) 및 계약 위임용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 : 안성 아양 영무예다음]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등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내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한 기간 또는 연간 183일 초과한 해외체류 여부 확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기존주택 처분 조건 당첨자		• 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한해
		○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 인터넷 청약(청약 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단 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 대상자 필수 제출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경우 제외
		○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명시)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 (주택소유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인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직인날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미성년자녀 포함)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발급)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발급” 선택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증명 서류	본인 (청약자)	• 해당 추천 기관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추천 명부로 접수함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배점기준표	본인 (청약자)	• 건본주택 비치 (배점검산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한 경우 (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자녀가 본인(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3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의 배우자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본인(청약자)와 동일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발급” 선택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청약자)	• 소득산정대상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 (건본주택 비차)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한 경우 (건본주택 비차)
		○	입양관계 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손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청약자) 및 성년자인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본인(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_ 1577-1000)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주서류 (※ 아래 소득증빙 구비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주서류 포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건본주택 비차)
		○	부동산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청약자) 및 세대원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등기열람 / 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본인(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주서류 (※ 아래 자산입증 구비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 (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발급)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본인(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표상 본인(청약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발급" 선택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신생아(2세 미만, 2세가 되는날 포함) 자녀로 신청한 경우 또는 배우자와 혼인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가점 산정 기준표	본인 (청약자)	• 기본주택 비치 ※가점 검산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배우자의 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발급” 선택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사항에 따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청약자)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등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발급” 선택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만30세미만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이상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청약자)	소득산정대상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 (건본주택 비치)
	○		소득세 납부입증서류		본인(청약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써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납부 입증서류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입증 구비서류 참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청약자)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한 경우 (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자녀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손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청약자) 및 성년자인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본인(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_ 1577-1000)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주서류 (※ 아래 소득증빙 구비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건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청약자)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등기열람 / 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본인(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 아래 자산입증 구비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 (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발급)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본인(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발급" 선택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신생아(2세 미만, 2세가 되는날 포함) 자녀로 신청한 경우 또는 배우자와 혼인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장	본인 (청약자)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내 비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불가
	○		인감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발급 (대리인 발급 불가) / 발급용도 : 서류제출(청약신청) 및 계약 위임용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 (직접작성) : 서류제출 및 계약 위임 / 제출처 : 안성 아양 영무예다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불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위임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 모바일신분증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대리인 개인정보수집 (견본주택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경우		○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본인(청약자) 및 세대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전세피해자 소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 계산하여 추정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③ 해당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홈택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자격득실서직장가입자만해당)	① 신규 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계속적인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 위촉증명서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전년도)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홈택스
	법인대표자	① (전전년도)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및 (전전년도) 재무제표 (직인날인) ③ 사업자등기부등본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수없는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모집공고일 이후 가입분 불가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또는 예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 - 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③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전년도)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전전년도)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소득산정 ②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①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해당직장 / 홈택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농업인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소득사실 없음"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예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건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기타 (근로자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류를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② 해당 직장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재직증명서 등 해당직장의 직인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서 류 구 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 급 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① 해당직장 / 세무서(홈텍스)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 ②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원본)	①, ② 세무서(홈텍스) ③, ④ 해당직장 / 세무서(홈텍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자산입증 구비서류

※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 서류	발 급 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	①, ②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③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④ 위택스
	본인 및 세대원 전원	①, ②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③ 위택스 / 서울시 이택스 ④ 위택스 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본인 및 세대원 전원	①, ②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③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④ 위택스
	본인 및 세대원 전원	① 행복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④ 위택스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위택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기준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서약서	본인 (청약자)	• 기본주택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 모바일신분증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발급 (대리인 발급 불가) / 발급용도 : 서류제출 및 계약 위임용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 : 안성 아양 영무예다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발급” 선택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발급” 선택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내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한 기간 또는 연간 183일 초과한 해외체류 여부 확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구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복무확인서	본인 (청약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또는 25년)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명시)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 (10년이상)을 명시 ※ 해당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 (25년이상)을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발급)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직인날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미성년자녀 포함)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일반공급 (가점제)	○		가점 산정 기준표	본인 (청약자)	• 건본주택 비치 ※가점 감산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 또는 재혼가정의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제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발급” 선택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등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발급” 선택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만30세미만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이상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전세피해자 제출서류		○	전세피해자 소명서류	해당 주택	•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공매 : 매각결정 통지서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대리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청약자)	• 발급기준 : 본인발급 (대리인 발급 불가) / 발급용도 : 서류제출 및 계약 위임용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서류제출 및 계약 위임 / 제출처 : 안성 아양 영무예다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위임장	본인 (청약자)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건본주택 내 비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불가
		○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서명)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합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됨.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임.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함.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 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임.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계약기간	장 소	문의전화	비고
2025.07.01.(화) ~ 2025.07.03.(목) (3일간, 10:00~16:00)	당사 건본주택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38)	031-671-7700	일정 및 시간의 변동 시 별도 공지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건본주택 제출(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수납 불가)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증	-	• 무통장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계좌이체확인서) ※ 건본주택 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 모바일신분증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위임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1통 제출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주택공급계약 체결용 /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 체결용)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 : 안성 아양 영무예다음] ※ 서류검수시 1통 제출한 경우 1통만 추가 제출 (서류검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리 계약하는 경우 2통 추가)
	○		인지세 (전자수입인지)	본인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 내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를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제3자)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		위임장	-	• 건본주택 내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 모바일신분증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기본적으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아래 참조)

- ①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②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②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동안 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가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장측량 등으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 (단, 세대당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광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가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

■ 부적격 당첨자의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단,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④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등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격이 제한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광주은행	1107-021-841502	코리아신탁(주)

-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부터 납부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정에 맞춰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예시 : 101동 1101호 : '1011101홍길동' / 101동 101호 : '1010101홍길동')
- ※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 계약 체결 시 분양대금 입금 확인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 알선조건은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에 60%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 및 조건에 따라, 중도금대출을 알선할 예정임. 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조건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자기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출은행과 대출협약에 따라 공급대금의 5% 이상 납부 이후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대출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대출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관련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대출 관련 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음.
- 당사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당사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진행에 따라 모집공고에 기재된 중도금 납부 약정일자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 분양계약해지 요구, 중도금 대출 신청 거부,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 선택 품목 대금 납부 거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기표 일정이 공급대금의 각 납부회차 이후일지라도 이전 회차의 공급대금까지 함께 기표하여야 함.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정보제공 미동의에 따른 대출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당사 및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서류의 미제출시 당사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음.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 및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알선은 확정이 아니며, 중도금대출이 알선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 자격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자 사전방문확인 제도 실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당사는 「주택법」제48조의2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도착 → ③ 접수,교육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전 보수 및 보수사항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입주예정일 : 2028년 5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2차 계약금, 중도금 등 분양대금에 대해 별도의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공사중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내란, 전쟁, 파업, 전염병의 발현, 문화재 출토, 암반발견, 법원의 공사중지 명령,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입주예정일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독서실, 등], 주민운동시설, 지하주차장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됨.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 VAT포함]

공급금액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비고
	10%	90%	
5,105,000	510,500	4,594,5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광주은행	1107-021-841502	코리아신탁(주)

- ※ 지정된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상기 계좌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 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해 주시기 바람.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 ※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예시 - 101동 1902호 계약자 → '1011902홍길동' / 103동 803호 계약자 → '1030803홍길동')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은 세대별로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시 진행할 예정이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세금(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견본주택 세대내 시설은 확장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니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 / 측벽 / 세대간벽의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확장부위(발코니 사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선홍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발코니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
- 대피시설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의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 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발코니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시 유상선택 품목)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 LG)

[단위 : 원 / VAT포함]

설치대수	설치위치	옵션금액		비고
		일반형	공기청정형	
2대	거실, 침실1	4,000,000	4,800,000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6,900,000	8,500,000	

- 시스템 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매립형 냉매배관을 제외하며,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해당 세대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미시공 시 에어컨 냉매 배관은 침실1, 거실에만 시공됨.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정높이,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별도의 무선 리모컨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설치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2) 가전기기

[단위 : 원 / VAT포함]

품목			제조사 / 모델명	공급금액	비고
3구 인덕션			LG / BEI3ASB4BI	1,100,000	
식기세척기			LG / DUE5NSE	1,300,000	
빌트인 냉장고	[선택1] 스테인레스 실버	4도어 냉장고	LG / BC4S1AA1	7,200,000	
		3도어 김치냉장고	LG / BC3K1AA1		
	[선택2] 글라스	4도어 냉장고	LG / BC4S1AA1	6,700,000	
		3도어 김치냉장고	LG / BC3K1AA1		
욕실 복합 환풍기(욕실1,2)			㈜하츠 / HMF-G500	660,000	
드레스룸 제습기			코스텔 / CDD-600B	900,000	

-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옵션 선택 시 수납특화 서랍장이 맞춤 구성 세트로 판매되며, 상품의 조합 및 설치, 모델, 디자인, 색상에 대한 개별선택 및 변경은 불가함.
- 빌트인 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일반 냉장고장이 확장 시 무상 설치되며, 도어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내 안내 및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 3구 인덕션 미선택 시 기본 가스쿡탑이 시공됨.
-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기본 하부장이 설치되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욕실 복합 환풍기 미선택 시 공용욕실, 부부욕실에 기본 환풍기가 시공됨.
- 드레스룸 제습기는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선택 가능하며, 미선택 시 드레인 배관이 설치되지 않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3) 가구, 인테리어 선택품목

[단위 : 원 / VAT포함]

구분	품목	세부내역		공급금액	비 고
현관,복도	현관중문 패키지	3연동 현관중문+침실 측 벽체 시트판넬		1,400,000	
	팬트리 패키지	현관팬트리+복도팬트리+팬트리 측 벽체 가구판넬		2,200,000	
거실	거실 월패드	24인치 월패드+터치식 네트워크 스위치+생활 정보기		2,000,000	
	거실바닥 특화	거실바닥타일(600*600)+에폭시줄눈		8,000,000	
	거실조명 특화	거실간접조명+디밍시스템+실링팬		4,500,000	
침실	불박이장	[선택1]	침실2,3 불박이장 (2개소)	1,800,000	가변형 벽체 시공 선택 시 선택 가능
		[선택2]	침실3 불박이장 (1개소)	1,000,000	가변형 벽체 시공 미선택 시 선택 가능
	드레스룸	[선택1] 일반형	일반 시스템 선반+화장대+슬라이딩 도어	2,800,000	
		[선택2] 고급형	판넬형 시스템 선반+화장대+슬라이딩 도어	6,200,000	
주방	주방조명 특화	주방 우물천정+간접조명+고급식탁등+라인주방등		1,500,000	
	주방 장식장	고급주방장식장+내부조명		3,400,000	
	엔지니어드스톤	엔지니어드스톤(상판+벽체)+아일랜드 매립형 콘센트		4,900,000	
	주방특화 패키지1	고급유리상부장(조명포함)+고급주방후드		1,500,000	
	주방특화 패키지2	사각싱크볼+고급주방수전		700,000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 계약 가능하며, 품목별 선택 계약이 가능함.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건립세대 해당)
- 현관중문 패키지 미선택 시 중문은 미설치되며, 침실 측 복도 벽체는 도배지 시공됨.
- 팬트리 패키지 미선택 시 날개벽(복도), 가구도어(복도, 현관, 드레스룸), 복도 팬트리 측 벽체 가구판넬은 미시공되며, 일반 도배(거실 도배지와 동일) 시공됨.
- 거실 월패드 미선택 시 10인치 기본 월패드 및 일반 스위치가 설치됨.
- 거실바닥 특화 미선택 시 바닥 타일 및 에폭시 줄눈은 시공되지 않으며, 강마루가 시공됨.
- 거실조명 특화 미선택 시 간접조명, 디밍 스위치 및 실링팬 설치되지 않으며, 일반 거실 일반등, 일반 전등스위치가 시공됨.
- 불박이장 미선택 시 불박이장은 설치되지 않으며, 벽체는 도배, 바닥은 마루로 시공됨.
- 침실2,3 가변형 벽체 시공 선택여부에 따라 불박이장 옵션 가구수가 상이함.
- 일반형 또는 고급형 침실1 드레스룸 미선택 시 시스템 가구, 화장대, 슬라이딩 도어가 미시공되며 일반 도배 시공됨.
- 주방조명 특화 미선택 시 우물천정과 간접조명은 시공되지 않으며, 일반 식탁등, 주방등이 시공됨.
- 주방 장식장 미선택 시 벽체 일반 도배 시공됨.
- 엔지니어드스톤 미선택 시 매립형 콘센트를 설치되지 않으며, 상판은 인조대리석, 벽체는 타일로 시공됨.
- 주방특화 패키지1 미선택 시 고급(유리도어)상부장, 독립형 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일반형 상부장, 일반형 후드가 시공됨.
- 주방특화 패키지2 미선택 시 일반 싱크볼 및 일반 주방수전이 설치됨.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은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 및 변경이 불가함.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각 품목 선택여부에 따라 시공위치, 디자인 등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에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약 및 납부일정

구 분			납부 일정	
금융기관	납부계약	예금주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광주은행	1107-021-841483	코리아신탁(주)	10%	90%

- 상기 계약은 추가 선택품목 관리계좌로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무통장 입금 및 계좌이체 가능)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비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101호 : '1011101홍길동' / 101동 101호 : '1010101홍길동')
-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추가 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추가선택품목(옵션) 계약서에 준함.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 「주택법」제54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구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품목
I	문	각 목문틀(사춤포함), 목문상부 마감판, 마감캡, 문선, 디지털도어록, 목문짝(각 침실문, 욕실문), 시트지, 창호철물 일체	욕실문틀 하부씼, 방화문틀 및 문짝, PL창호
II	바닥	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마루귀틀, 현관디딤판, 발코니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III	벽	벽지(초배지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경량칸막이 등), 각방 온도조절기, 발코니 수전류	석고보드(단열공사), 시멘트 벽돌, 미장공사, 발코니벽 도장, 에어컨 냉매배관(침실1+거실), 홈네트워크 관련설비(월패드 등)
IV	천장	천정지(초배지포함), 등박스(우물천정포함), 반자돌림(몰딩포함)	천정을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 스프링 쿨러 배관 및 헤드, 기계환기설비
V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수전류, 악세사리류, 욕실장, 천정재(천정틀포함), 샤워부스, 욕실바닥 및 벽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욕실등기구, 스위치, 콘센트	시멘트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 배관·배선
VI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기본형 기준-상판, 가스쿡탑, 레인지후드), 벽타일, 설비수전류, 액세서리 일체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급·배수, 오수, 난방) 주방배기덕트, 전기통신배관배선
VII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 파우더장, 반침가구(불박이장, 시스템장), 수납선반	
VIII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배전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욕실제외) 등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약식표기)	84
금 액	35,650,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을 신청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배전기류류 위치 등은 발코니 비확장 세대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람.
-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일반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당해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개시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주택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견본주택 내 평면도와 시방서, 마감자재 리스트(당사 홈페이지 확인가능)를 비치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직접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타 지역,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명칭 및 동표기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하여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함.

■ 아양지구 교육 및 외부여건

※ 학교 및 어린이집 관련 유의사항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백성초등학교이나 인근 개발지구 사업 여부에 따라 통학구역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학생 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중학교의 경우 안성중학교(안성중, 안성여중, 비룡중, 안성중, 명륜여중)에 속하며 배정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학군내 선 지망, 후 추첨에 의해 배정하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학교학군은 매년 설정 및 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등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 및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및 단지 외부 여건

- 사업지구 북측으로 통과하고 있는 국도 38호선이 지역간의 동서를 연결하며, 사업지구 동측으로 대로3-1호선과 서측으로 대로3-2호선이 지역간의 남북을 연결하고 있음.
- 사업지구 남측으로 대로3-11호선은 추후 확장공사 예정이며, 사업지구 서측 경계와 인접하여 통과하는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가 완공되었음.
- 사업지구 동측에 구시가지 및 안성터미널과 안성시청, 남측에 안성경찰서와 안성소방서, 안성천, 서측에 알미산 공원, 북측에 이마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서측에 금석천이 일부 포함되어 안성천으로 유하하고 있음.
- 사업지구 주변으로 중앙대학교 및 국립한경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음.
- 안성아양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입주 후 택지지구 내 주변단지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내 근린공원(사업지구 남서측) 내에는 저류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저류지 내에는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설치 될 예정임에 따라 상시 우수가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서측에 위치한 전기공급설비 부지는 안성아양 택지지구 내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소(옥내형)가 설치될 예정임.
- 단지 남측으로 공원부지가 각각 예정되어 있음.
- 단지 서측으로 단독주택부지가 예정되어 있어 주변세대는 소음 등에 의해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모형도 및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표기된 주변 공원과 녹지계획 등 기반시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계획변경에 따라 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구여건

- 당해 지구 내 토지 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주차장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학교용지 등의 개설과 인접대지, 보행자도로, 연결녹지 등의 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기타 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전면조망, 생활권 등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인근 시설, 확장도로 등은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단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인근 상업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인해 일부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기타용지(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주차장용지)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청약접수전에 현장위치 및 주변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에는 완충녹지, 공공공지, 연결녹지, 보행자 도로 등의 계획에 따라 전면 조망 및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지 주변의 개발사업은 지자체, 국가기관 및 해당 토지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입주시기 후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분진, 소음,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사업지 주변의 관공서, 학교시설 등은 지자체 및 관할기관이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일정에 따라 입주시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사항

※ 인허가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 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음.
- 현장여건과 향후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도면 및 착공도면, 준공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홍보물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독서실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 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단지모형도 및 홍보물상 표현된 지구 내 학교, 공원, 도로계획, 지구경계 등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획 및 공사 중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음.
- 각종 광고·홍보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현된 이미지 등에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고 도로, 공원, 건물, 기타 시설 등이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부 여건

※ 공통사항

- 청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 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조경시설물 및 미술장식품, 주차장 램프인접세대)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미리 확인 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람. (청약 전 설계도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함)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통신중계장치,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주출입구는 단지 서측에 위치하며, 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차량 진입구는 1개소로 단지내 상가 주차장 진입을 위한 차량 출입구가 동일함.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일 등 당사가 지정한 날짜 외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일부 저층부 세대 전면 또는 후면에 조경식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간섭 및 일부 일조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인한 동·호수 변경 및 식재위치 변경 등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입구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지반 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내에 설치하는 구조물(콘크리트 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에는 재활용 보관소 및 CT박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재활용 보관소 및 CT박스와 인접한 세대는 냄새, 소음, 진동 등에 노출될 수 있으니 인지하시기 바람.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음.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및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는 인근 세대는 소음, 조망 및 분진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층 환기 및 채광을 위하여 채광창 및 D.A가 지상에 노출되며, 저층 세대에서 시야 간섭, 소음 및 분진 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위치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 단지 내에는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에 실외기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 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하부 PIT층에 재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공용 태양광 패널이 101동~104동(총 4개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시공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단지내 102동, 104동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전 견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단, 이동통신구축지원센터의 협의결과 옥외 옥상 안테나는 없으나 추후 공사 시 불특정 옥상에 설치될 수 있음.
-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세대 내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될 수 있음.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 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동의 없이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 진행 시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등으로 인해 조망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동출입구 형태는 단지지형 및 건축계획을 고려하여 다르게 디자인될 수 있음.
- 본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정,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디자인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 단위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 필터 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운영방식 및 관리비 부과 등은 입주자가 결정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음.
- 지하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 세대는 어린이 놀이터, 옥외운동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생활소음 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동별 유의사항

- 각 동에 인접 설치되는 각종 단지 내 공용시설물이 근접 설치되므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101동, 104동 정면 및 측면부에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여 단지 내 도로(주출입구, 지하주차장입구, 램프 포함)인접 세대는 자동차 진·출입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전조등의 불빛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출입구 101동, 104동 사이에는 맘스스테이션 위치해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주변 세대는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출입구는 1개소로 104동 측면부에 주출입구를 상징하는 문주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채광 및 시야간섭 문주의 야간조명에 따른 불빛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인허가, 실시설계, 특화설계에 따라 크기,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102동, 103동 사이에 어린이놀이터, 에코가든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주변 세대는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102동 사이와 103동, 104동 전면부에는 주민 휴게공간이 각각 위치해 있어,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주변 세대는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중앙에 지하1층 선큰이 설치되어 있으며, 선큰 주변 지하1층에 커뮤니티 센터[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G·X룸, 독서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이

있을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101동 일부 전면 및 104동 측면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주변 세대는 소음, 먼지 및 실외기(근린생활시설 옥상 및 후면배치)로 인한 열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의 (101동 전면)조망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104동 인근 지하층에는 저수조/펌프실,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지하층 출입구 인근에 무인 택배보관함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장소 및 수량(라인당 세대수 비율적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각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채광 및 환기구, 재활용 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도면 및 모형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개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지하층에는 제연휰룸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조망과 일조량 등이 제한되고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당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사전검사를 통한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채광창, 재활용 보관소, 실외기,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고급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함.
- 주동 1층 로비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구조체 형태 및 마감 여건에 따라 각 동 지하 출입문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뿔칠, 페인트로 마감되며, 주동형태에 따라 석재와 뿔칠, 페인트의 적용비율은 각동별로 상이할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석재는 입면디자인에 따라 석종, 마감면 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의 생산단종 및 수입 여건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음.
- 치장 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환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 난간대, 공용부위 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 프레임 두께, 색상, 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101동, 102동, 104동 3층세대 하향식피난구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의거 완강기를 설치함.
- 104동 인근 지하층에 저수조,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해당 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조경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는 조경계획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수목의 수량 및 종류 형태 등은 조경 특화설계 및 환경개선 목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대지 경계에는 레벨차이에 의해 보강토옹벽, 골조 옹벽 또는 조경석 등이 설치되며,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본 시공 시 홍보물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 연결녹지 구간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사범위로 본 단지 공사와 무관하며, 녹지공간에 식재되는 식재의 종류 및 녹지공간의 높이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일부 저층세대는 녹지 공간에 따른 벌레, 모기, 해충 등에 환경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음.

■ 외관 / 조명

- 본 단지의 BI, CI는 지구단위 지침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시공 여건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의 민원에 의하여 브랜드명, 단지명, 팻네임 등을 변경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건물외관(옥탑, 주동출입구), 아파트의 외부색채/패턴, 줄눈 패턴, 주현관, 필로티(내외부) 등은 분양 이후 세부 디자인 완료 시 확정되며,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건축심의 조건에 따라 일부동 외벽에 콘크리트 몰딩이 돌출되며, 이로인한 일부 세대는 빗물소리 돌출 몰딩의 오염 등이 따를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주동 주출입구 게이트 디자인은 위치에 따라 석재 돌출 치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게이트의 위치가 바뀔 수 있음.
- 출입구 디자인 벽체 및 브랜드의 명칭, 로고의 디자인, 규격,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하여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본 아파트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통신시설, 위성안테나, 경관조명,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다수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일부 고주파 소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음.
- 본 단지의 주동 저층 외벽부 마감은 3개층은 석재 및 일부 수성페인트 혼합, 3개층 이상은 수성페인트 마감이 기본 마감으로 시공됨.(특화설계에 따라 층수 영역 및 구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석공사에 쓰이는 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VEIN)는 천연석 특성 또는 제품 간 차이로 인하여 색상 및 무늬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단지 일부 옥상/옥탑부/측벽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의 상세 계획은 미정으로, 실시공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분양홍보자료(모형, CG등)에 표현된 옥탑 디자인 구조물의 규격, 기둥의 위치/크기, 간살 등의 규격 등은 이해를 돕기위한 대략적인 표현으로 실시설계 및 구조계산에 따라 세부규격이 결정되므로, 분양홍보자료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설치되는 경관조명, 보안등, 수목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조명 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비용 일체(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설치되는 가로등, 보안등, 수목 등 및 기타 조명에 의하여 야간에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공용부 유의사항

- 주동의 필로티 공간은 주동출입, 보행통로 또는 공용부분으로 개인이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동의 필로티 옆, 상층부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와 현관문 사이 일부에 설치되는 홀, 복도 등의 공간 및 세대간 PIT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 타입별로 구조 및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주출입구에 설치되며, 문주 디자인은 심의기준 및 사업주체 고유 디자인으로 변경 이의제기 할 수 없음. 또한, 문주 설치로 인한 인접동에 일조권 및 시야간섭이 있을수 있음.
- PD, EPS, TPS실 등 내측 조작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음.
- PD, EPS, TPS실 등은 철판으로 시공되며 철판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음.(단, 지하 및 1층에는 공용홀 마감계획에 따라 조적으로 시공될 수 있음)
- 각 세대별 현관 출입문에는 소방성능 제연설비 테스트를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되며, 이는 각 층별 1개소로 좌,우 세대별 1세대만 설치됨을 인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용시설

- 단지 내 지하층에는 전기실/발전기실, 저수조/펌프실 등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매연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력방지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 비용은 공용요금으로 부과됨.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공장소인 단지 내 보도,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기계/전기/발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TOP LIGHT(천창, 채광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재활용 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분진,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GX, 골프연습장),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공동시설에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분진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 조경, 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엘리베이터의 구조물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및 경비실, D.A. 구조물, 저층부 마감, 동별 출입구 디자인 및 장식물, 단지 내부 보행로 및 차로 바닥포장재 및 난간대 등 모든 외부 환경 시설물은 세부적인 디자인 작업 진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및 크기, 색상, 재질, 형태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외보안등 등 각종 조명 및 기타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출입구, 문주 등 단지내 시설물 등의 특화로 인해 일부세대에는 조망 및 채광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조경 및 도로, 시설물 등은 모형과 다를 수 있으며 CG, 각종 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부대시설 및 지하 PIT 등은 입주개시일 이후 일정 기간 AS사무실 및 AS자재 창고로 운영될 수 있음.

■ 공용설비 및 시스템

- 각동 지하 피트 내부에는 배수처리를 위한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며 펌프 가동 시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각 주동 세대별 동체감지시스템은 최하층 2개층(필로티 포함), 최상층은 외부 창호 전체, 기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
- 각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하부 피트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붕층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위치, 설치 각도 및 설치 면적, 장비의 구성 등 세부사항은 태양광설비의 최대 전력생산 등을 고려하여 설치될 예정으로 실시공 시 도면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주동 옥상의 지붕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세대의 위치에 따라 눈부심, 빛반사 등의 발생과 함께 일조, 조망 또는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붕층 및 옥탑 등에 설치되는 경관조명 및 옥상구조물은 실시공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경관조명 작동 및 운영, 유지보수 등 관련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이며, 이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인허가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몰딩(모양, 재질, 위치) 등)은 현장 시공 시 모형, CG, 각종 홍보물과 달리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1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아파트 외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홈페이지, 팜플렛,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사위,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침실1 전면 발코니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 개방시 경보음 등의 소음이 생길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의 위치는 각층별로 교차 시공되며 일부 저층세대는 설치가 되지 않음.
- 실외기실은 주방 발코니 별도의 실로 구성되어 있음.
- 세대 및 타입별 발코니 확장 여부 등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일부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발코니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 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샷시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이 발코니 내부로 유입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바닥, 벽, 천정부위의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포함) 등이 설치되어 가려지는 부분(비노출면)은 마감재가 미시공됨.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티밍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음.
- 세대내 목문창호는 ABS도어로 설치되며,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끼임 방지재 설치됨.
- 석재류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방 렌지후드내에는 자동식 소화기 설치되어 화재시 소화액이 분사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구,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일조량 및 조망권은 당해 단지 여건 및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계약 전 사전 확인하기 바람.
-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당사가 임의 조정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보일러는 주방 옆 발코니에 설치될 예정임.
-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등의 기준으로 시공 예정이나, 층 및 향에 따라 발생하는 바람의 영향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안목 / 치수

- 건축/인테리어 도면의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 및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변경 될 수 있음. 이로인한 실 사용공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창호

- 세대의 창호의 형태 및 재질, 색상, 크기, 창호분할의 위치 및 개폐방향, 위치, 유리사양, 창호 분할수 등은 현장 여건 및 미관, 내풍압,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 도어 열림방향은 수납선반설치 위치 및 이용자 동선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도면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침실1 분합문 커텐박스 높이는 스프링클러 배관설치에 따라 높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세대의 위아래 인접세대의 발코니 확장여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로 인하여 커텐박스의 깊이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이는 공동주택 성능을 위한 것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계약하여야 함.
- 세대 외부창호 및 계단실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결과에 따라 층별,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1층 및 기준층 세대의 창호 크기는 동일함.
- 세대내 설치된 PL창호는 본 공사시 동등성능의 현대, LX, KCC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현관 상부에 설치된 타공 구멍은 소방성능 제연설비 테스트를 위한 차압측정공으로 각 층별 1세대 적용에 따라 옆 세대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람.
- 현관 출입문 포함 각 층 철재문에 도어스토퍼(말굽)은 제공되지 않음.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 목적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전기 / 설비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전기 마감재 위치는 본 공사 시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는 타일의 줄눈 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없음.
- 각 타입 침실 벽체 1개소에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이 노출 설치되어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각 타입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이 설치되는 벽체가 경량벽체인 경우 설비설치를 위하여 벽체 두께가 조정될 수 있고, 골조벽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과 침실1에 매립 설치되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세대는 제외.(일부 중복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음)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디퓨저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기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단위세대 내 커텐박스 사이즈 및 높이가 조절될 수 있음.
- 냉장과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과 후면 벽면 하부에서 주방 싱크대 하부장까지 공CD관이 매립설치 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분기하고 배관을 연결해야 함.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음.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등 원격제어가 가능하나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어플 및 세대인증이 필요하고 휴대폰 제어되는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 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을 수 있음.

■ 욕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 및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임.(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없으며,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실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욕실 천정의 천정재 및 벽, 바닥의 타일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그 위치는 점검 편의 등을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샤워부스 및 욕조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고 변기 및 세면기 인근 바닥 일부에만 설치되며, 욕실 바닥 난방은 온수분배기에서 개별 제어가 되지 않고 인접 실의 바닥 난방과 연계되어 작동 가능함.
- 욕실 샤워부스 및 욕조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욕실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음.

■ 가구 및 마감재

- 단위세대 가구류는 발코니 확장 또는 발코니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세대 내 가구는 추후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주요 입찰 참여업체는 내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방가구(상,하부장), 신발장, 화장대, 붙박이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상하부, 측후면 등 비노출면에는 마루, 타일, 도배지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의 시공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욕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 등 보이지 않는 곳은 실제 시공 시 재생 타일을 이용하여 마감하거나 혹은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자의 개별 냉장과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냉장과 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세대 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바닥 마감재의 배열 방향과 나누기 배치 및 위치 등은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및 구역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확장부위는 22mm 로이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비확장 부위인 침실1 발코니 내측은 22mm 복층유리 이중창, 외측은 22mm 로이복층유리 단창으로 설치됨.
-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발코니 내측에 22mm 로이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설치되며(기타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샷시가 설치되지 않음), 발코니 비확장 시 발코니 확장 선택 시와 샷시 설치기준이 상이하오니, 건본주택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길 바람.
- 발코니 샷시는 22mm 로이복층유리 적용을 기본사양으로 하며,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건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의 발코니 비확장으로 인한 단열재 시공으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옆 세대가 발코니 비확장일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의 단열을 위하여 발코니 비확장 세대 및 발코니 확장 세대 측벽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실사용 폭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의 발코니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발코니 확장 세대와 다르게 가구 설치 기준이 상이하고, 서비스 품목이 제공되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품목이 제공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충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유상선택 품목)

- 추가 선택품목 (유상선택 품목)에 대한 선택은 확장형 선택시에만 선택 가능함.
- 추가 선택품목 (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가전, 식기세척기, 인덕션 3구, 주방가구 및 기타 인테리어 선택품목 등은 별도 추가선택 품목 계약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 항목 등은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람.
- 가전제품, 도기 및 수전금구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서 계약시 형태, 제품사양 등에 교체 및 변경을 요청하실 수 없음.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함.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의 추가 선택품목 (유상선택 품목)의 계약이 불가함.
- 추가 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건본 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추가선택품목(유상선택 품목) 포함으로 설치되어 있으니 유,무상 옵션사항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구간은 상가후면 및 옥상에 배치될 예정이며, 실외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와 경계가 분리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아파트와 일부 동선이 중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 보관함 관리주체는 해당시설 입점자(입실자)가 관리함.
-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환기구가 설치되어 저층부 세대에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시설에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및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입주자에게 인계할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 독서실등 이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등)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동의 1층 및 지하층에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회의실, 독서실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경로당에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분양 카달로그 상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으로 실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음.

※ 주차장

- 공동주택 주차대수 416대, 근린생활시설 3대 총 419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추후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함.
- 단지 내 단차로 인해 주차장 계획이 동별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헬름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1,2층 두개층이며, 지하주차장 출입구 유효높이는 2.7m, 지하1층 주차장 차로의 유효높이는 2.7m, 지하2층 주차장 차로의 유효높이는 2.3m로 설계되어 있으며, 실제 시공 시 유효천정고는 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설비가 총 30개소(급속 1개소, 완속 29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의 위치, 구조에 따라 배치는 달라질 수 있음.
- 전기차 전용 주차구간 측벽에는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벽이 설치됨.
-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 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출입램프 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

※ 공통사항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 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기준, 옵션형 선택사항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옵션 미 선택시 가구사양, 배치, 마감재의 디자인 및 재질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사진 등은 당사에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현관 방화문, 가구, 창호(향후 풍압테스트에 따라 조정)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조명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되며, 이 경우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이므로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영상을 볼 수 있음.(다만, 내부 촬영 동영상의 복사, 반출, 캡처 등을 통한 외부 유출은 절대 불가하며, 촬영방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시공 시 설계도서 및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견본주택 및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경우(경미한 변경 발생)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이를 추후 통보하도록 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함.
- 견본주택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이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되어 있으나,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음향 설비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시공 시 미설치됨.
- 본 견본주택은 84형, 단일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호수 지정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단지배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달리 좌,우 대칭이 될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타입과 달리 아파트의 배치 및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형으로 향후 아파트 내,외관 색채 조경 기타 시설물의 디자인 및 색상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아트월 타일, 화장실, 주방 벽타일등은 실제 시공 시 줄눈의 간격 및 문양의 패턴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람.

■ 사이버 견본주택 유의사항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람.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 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의 VR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12

기타사항

■ 지하주차장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9의2호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7~7m	2.7m	3.1m(램프구간)

■ 실외소음도 예측 측정기관 및 예측결과

측정기관		교통소음원			측정결과		
(주)한국소음진동		차량			실외소음도 65dB(A) 미만 / 실내소음도 45dB(A) 이하		
구분		5층 이하 실외소음도 [dB(A)]			6층 이상 실내소음도 [dB(A)]		
		1층	5층	평가	최고층	소음도	평가
101동	1지점	62	64	기준만족	25F	30.8	기준만족
	2지점	58	62	기준만족			
	3지점	56	60	기준만족			
	4지점	55	58	기준만족			
102동	1지점	51	54	기준만족			
	2지점	50	53	기준만족			
	3지점	50	52	기준만족			
	4지점	49	51	기준만족			
104동	1지점	55	58	기준만족	18F	28.5	기준만족
	2지점	54	56	기준만족			

※ 위의 실외소음도 예측결과는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의한 것이며, 준공 후 소음도와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의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전용보일러(다목)	적용	개별난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 에너지소비효율 92%이상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규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안성 아양 영무예다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25,127,709,064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10,666,807,250	기계설비	위생기구설비공사	457,149,380			
	기간이자	503,410,537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253,971,430			
	필요적 경비	1,249,672,311			조적공사	101,588,970		가스설비공사	152,383,450			
	그 밖의 비용	4,118,088,088			미장공사	1,015,886,730		자동제어설비공사	-			
	소계	30,998,880,000			단열공사	101,588,970		특수설비공사	-			
공사비	토목	토공사			609,531,840	공 사 비		그밖의 공종	방수·방습공사	1,269,858,170	공조설비공사	-
		흙막이공사			-				목공사	914,297,760	전기설비공사	2,996,864,720
		비탈면보호공사			50,794,480		가구공사		2,946,070,240	정보통신공사	1,727,006,550	
		옹벽공사			355,560,400		금속공사		711,120,810	소방설비공사	4,317,517,380	
		석축공사			101,588,970		지붕 및 홈통공사		101,588,970	승강기공사	761,915,300	
		우수·오수공사			203,176,940		창호공사		1,727,006,550	그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1,327,560,240
		공동구 공사			914,297,760		유리공사		1,168,269,190		이윤	2,261,769,64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타일공사	2,031,772,470	소계		51,894,731,720	
		도로포장공사			1,015,886,730		돌공사	50,794,480	간 접 비	설계비	742,376,350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50,794,480		도장공사	1,523,829,600		감리비	1,272,411,720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1,676,213,060		일반분양시설경비	6,883,646,380	
		조경공사			914,297,760		수장공사	761,915,300		분담금 및 부담비	4,671,045,970	
		부대시설공사			812,708,790		주방용구공사	2,031,772,470		보상비	-	
		공통가설공사			101,588,970		그 밖의 건축공사	507,942,870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20,103,984,508	
	건축	가시설물공사		1,523,829,600	기 계 설 비	급수설비공사	406,354,890	소계		33,673,464,928		
		지정 및 기초공사		304,765,920		급탕설비공사	304,765,920	그 밖의 비용		6,984,923,352		
		철골공사		-		오배수 및 배수설비공사	660,326,320	합계		123,552,000,000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 「주택법」 제 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위 : 원]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택지비 가산비	말뚝박기 공사비	973,363,356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3,724,945,243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기간이자비용	503,410,537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제세공과금, 기부채납 비용 등 그 밖의 경비	1,249,672,311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합 계	6,451,391,447		
건축비 가산비	공동주택 성능등급 가산비		2,053,408,752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저층부 석재마감 공사비		-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불인정
	법정 초과 조경설치비		-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불인정
	법정 초과 복리시설		289,136,681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홈인테리어	홈네트워크	2,562,184,800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821,758,500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에어컨 냉매배관	677,475,900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기계환기설비	984,741,300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분양보증수수료 등		363,650,609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		1,163,114,784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인정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316,345,500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불인정
	합 계		9,231,816,826	

■ 내진 성능 여부

• 본 아파트는 「건축법」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구 분	등 급
내진중요도 I	VII-0.204g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상 호	(주)유원건축사사무소	(주)한빛네트웍스	(주)21세기이엔지	(주)한빛네트웍스
감리금액	984,055,600	93,973,000	68,640,000	130,24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5612025-101-0001400 호	80,308,8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안성 아양 영무예다음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임.

■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유사오피스텔(선택품목)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자금관리 대리사무 관련 특약사항

- ① 코리아신탁(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③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⑤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 ⑥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① 사업주체의 PF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경우 자금관리자인 코리아신탁(주)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수납계좌가 변경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②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차인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룰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구 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상 호	주식회사 더와이	주식회사 와이엠건설
등 록 번 호	170111-0677552	200111 - 0292022

※ 사업주체(시행사) 및 시공사의 법인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에게 고지하고 별도 공고는 하지 않음.

■ 분양관련 문의

대표번호	건본주택 위치	홈페이지
031-671-7700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38	http://안성아양영무예다움.com

■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안성 아양 영무예다움 건본주택 및 사업주체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우선함.